

#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28.(월)  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4. 8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14. 4. 9.

라. 상정일자 : 2014. 4. 28.(제21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이호근
- 검토보고 :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3.12.30.)에 따라 “지역교육청” 명칭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하여 통일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(안 제2조 및 제4조)

-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11개 조례 내용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3.12.30.)에 따라 “지역교육청” 명칭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하여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- 주요 검토 내용은

- 안 제2조 및 제4조 내용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.
- 부칙으로 11개 조례의 내용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.
  - ① 「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
  - ② 「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조례」
  - ③ 「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」
  - ④ 「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」
  - ⑤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
  - ⑥ 「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
  - ⑦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」
  - ⑧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 - ⑨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」
  - ⑩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」
  - ⑪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검토의견

- 안 제2조 및 제4조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3.12.30.)에 따라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의 내용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부칙은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없음”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김영태, 허희숙, 구재용, 권용오, 배상만 위원
-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요지

“없음”

8. 기타사항

“없음”

붙임 :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”을 “(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및 마목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

청”으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④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⑤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⑥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자목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제6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⑦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⑧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 을 “교육지원청” 으로 한다.

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 을 “교육지원청” 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국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본청과 <u>지역교육청</u>에 두는 국장·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<u>지역교육청</u>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<u>지역교육청</u> 하부조직의 설치 등) <u>지역교육청</u>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<u>지역교육청</u>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국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----- <u>교육지원청</u>----- ----- <u>교육지원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<u>교육지원청</u> 하부조직의 설치 등) <u>교육지원청</u> ----- ----- <u>교육지원청</u> ----- ----- -----.</p>